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실증적 분석*

-임금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박 재 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요 약]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고령장애인, 이중차별, 고용, 임금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인구고령화는 서구 선진국처럼 고령자의 조기퇴직이 아닌 노동력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이철희, 2006). 또한 장애출현율의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의 장애화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대비 2011년에 고령장애인(50-64세) 인구수는 210,638명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늘어나 838,923명에 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43.88%에서 2011년 48.67%로 4.79%p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11). 고령노동을 예측할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은퇴 예상 나이도 60-64세 11.9%, 65-69세 26.3%, 70-74세 35.7%로 60세 이후에도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고령장애인이 고령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주된 이유는 '노후준비'(36.3%) 보다 '생활비를 벌거나 가족부양'(71.6%) 이기 때문에(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퇴직 경로 유형은 경제상태가 열악하여 정규퇴직 시점 이후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전형적인 '지속근로자형' 또는 '장기지속근로자형'에 해당한다(홍백의·김혜연, 2010).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는 1990년대 초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년)과 고령자고용촉진법(1991년)을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청장년장애인과 일반고령자에 비해 낮은 종사상지위와 임금을 받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고령장애인(45-64세)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 비율이 41.3%로 청장년장애인(15-44세)의 63.1%과 일반고령자(45-64세)의 56.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시일용직 고용확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통계청, 2008). 아울러 2008년 고령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92만원으로 청장년장애인(157만원)의 58.3%, 일반고령자(196만원)의 46.7%에 불과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통계청, 2008). 이와 같이 고령장애인의 낮은 종사상 지위와 임금수준의 현격한 격차 때문에 연령과 장애로 인한 중복소외(double disadvantage) 또는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의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김은혜·이효성, 2006; 김용탁, 2007; 황진수, 2008).

국내에서 고령장애인의 고용관련 선행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에 관한 연구(이효성 외, 2007; 박혜전, 2007),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황주희, 2011),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연구(노승현, 2012),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연구(김용탁, 2007; 황진수, 2008; 전미리·안선영, 2011), 중복소외에 관한 연구(김은혜·이효성, 2006; 황진수, 2008)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수가 제한되어 선행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령과 노령에 대한 개념적 혼선이 있고 이미 장애인과 고령자 집단을 위한 고용촉진 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연구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가 없었고 주로 중복소외의 가능성을 문헌연구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중차별' 보다는 '중복소외', '이중소외'(김은혜·이효성, 2006), '2중고의 소외'(황진수, 2008) 로 표현되었고 타집단과 경제활동관련 통계치를 비교하여 이중소외의 가능성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노동시장 차별분야와 행위를 규명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도 고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Madden, 2004; Gannon and Munley, 2009; Pagán, 2009; Bjelland and Bruyère, 2010).

이에 본 논문은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 및 일반고령자와 비교하여 연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실질격차를 집단간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decomposition)하여 고령장애인이 과연 '연령'과 '장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이 고용정책과 차별금지법으로 이중수혜를 받고 있는지 혹은 오히려 연령과 장애의 이중차별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에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힘겨운 노동을 지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고령장애인의 개념 고찰

고령이란 용어는 1991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現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 고령은 사전적인 의미로 ‘많은 나이’를 뜻하기 때문에 ‘늙은 나이’를 의미하는 ‘노령’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어 사용을 구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탁(2007)은 고령장애인의 개념을 노인, 노령장애인 등의 개념을 포괄하여 5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지만 박혜전 외(2003)는 노령장애인을 5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주희(2011)는 고령장애인을 만 55세 이상이며 고령으로 인한 장애를 경험하는 자이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노후를 맞이한 노령화된 장애인 모두를 포함하였다. 이처럼 노령은 ‘노화’, ‘노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는 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성재·장인협, 2006).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 상에 주서비스 연령인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다양한 연령구분이 존재한다.²⁾ 일부 문헌에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고 했으나 실제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노인들에게 경로우대 서비스 등에 65세 이상인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60세 또는 그 미만도 노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 제33조2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60세 이상 노인도 가능하고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고령은 역연령방식(chronological age)에 의해서만 정의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50-54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의 나이 구분 보다는 연령대가 적을 수 있다.

-
- 1) 국회도서관 검색 사이트에서 단어검색으로 “고령”을 발행연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검색한 결과, 전체1862건 중에서 70년대, 80년대는 국내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일본 문헌들이 검색되었다. 90년대 초부터 고령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문헌상에 나타났다.
 - 2)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학자들에 의하면, Neugarten(1974)은 55-75세 연소노인(young-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구분했고, Brody(1977)는 60-64세 연소노인(young-old), 65-74세 중고령노인(middle-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 구분했다(최성재·장인협, 2006 재인용). 국내 학자 중에서 최성재·장인협(2006)은 60-69세를 연소노인, 70-75세 중고령노인, 75-84세 고령노인, 85세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표 1〉 고령과 노령의 구분³⁾

구분	고령(高齡), 고령자(高齡者)	노령(老齡), 노인(老人)
개념	'많은 나이'로 연령구분 의미. 주로 50-64세 미만을 말함	'높은 나이'로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변화 의미. 주로 65세 이상을 의미
구분 방식	역연령(chronological age)	역연령(chronological age) 기능적연령(functional age) 생애주기, 심리적/사회적연령
고용정책 법규정 여부	법으로 규정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91. 12. 31. 제정]	법으로 규정하지 못함 -노인복지법에 노인을 연령으로 규정하지 않음
단어의 학문적 연혁	1991년 법제정 전까지 국내에서 학문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	1968년 한국노인병학회가 창설되면서 학문적 연구 시작(최성재·장인협, 2006)
사용분야	고용 및 노동 분야	보건 및 복지 분야

이처럼 노령과 구분하여 고령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이 첫째, 고령의 개념은 단순히 연령구분으로 '많은 나이'를 의미한다. 둘째, 고령은 노령과 달리 역연령 방식에 의해서만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구분한다. 셋째,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도입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법에는 50-54세를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하고 있다. 넷째, 고용 및 노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한다(김용탁,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 준하여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노령과 구분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고령장애인 노동시장 이중차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고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 연구는 실증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존 실증적 선행연구는 주로 일반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장애차별을 각각 검증하거나 성별(sex)과 장애(disability)로 인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고용과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유동철, 2000; 강동욱, 2002; Baldwin and Johnson, 1995). 유동철(2000)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차별을 〈표 2〉와 같이 개념화 하고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차별은 고용행위와 동시에 직종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종차별(전문사무직, 비전문생산직)을 고용차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진입후 차별은 승진·배치상 차별영향이 임금차별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여 포괄적으로 임금차별로 설명하였다.

3) 고령과 노령의 포괄적 개념으로 박경수(2006)는 '고령층'이라는 단어를 제안했고 최근에 정부는 노동이 가능한 연령을 강조하기 위해 고령 대신 '장년'(長年)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입법예고 하였다.

〈표 2〉 노동시장 차별의 개념화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차별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차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차별
	노동시장 진입후의 차별

고용차별	
직종차별 →	종사상지위차별
승진·배치상의 차별	
임금차별	

* 유동철(2000) 재구성

그러나 유동철(2000)의 연구는 분석대상자의 경제활동형태별 분포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이 79.8%로 일반인의 실업률 5.9%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⁴⁾ 직종별 구성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전문사무직 비율이 3.6%, 비전문생산직이 16.6%로 일반인의 전문사무직 40.0%, 비전문생산직 54.1%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따라서 유동철(2000)의 두 가지 분석자료에서 실업의 기준과 직종분류상의 불일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실업기준(4주)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분류체계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분류를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로 구분하여 고용차별(종사상지위차별을 포함)과 임금차별을 검토하였다.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연구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에서의 격차를 Oaxaca(1973)의 표준 격차분해 방식을 이용하여 성차별을 보고, 여성장애인과 여성일반인을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보았다. 유동철(2000)은 여성장애인이 직종과 무관하게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성별(sex)과 장애(disability)로 노동시장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고 차별 정도 면에서는 장애차별이 성차별 보다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 선호현상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동시에 반영한다고 분석하였다. 또 강동욱(2002)의 연구는 연구주제와 방법론적으로 유동철(2000)의 연구와 비슷하나 분석자료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했고 표본을 전체 10개 장애유형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유동철(2000)의 연구결과와 달리 이중차별은 확인되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영향이 장애차별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방법론 상에서 남재량(2007) 및 오욱찬(2011)은 유동철(2000)과 강동욱(2002)의 연구에서 실질격차의 유의성에 주목하여 비교 집단간 실질격차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전제 된 이후 격차분해를 통한 차별을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비교집단의 기준변수가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격차분해를 통해 차별을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인 분석절차가 될 수 없다고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의 제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Madden(2004) 등 국외의 연구들은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검증과 관련하여 비건강상태(unhealthy status)의 개념 범위⁵⁾와 변수의 내생적(endogenous) 또는 외생적(exogenous) 개념에 주목한 연구들

4) 2008년 15-64세의 장애인의 활동상태를 추정한 수치에 의하면 총임금근로자 502,554명 중에서 실업자는 73,339명으로 실업률은 약 14.6% 정도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5) Madden(2004)은 노동시장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장애인 포함)에 대한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 비건강상태(unhealthy status)를 통제하면서 '당신은 만성질환, 장애, 질병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넓은 의미의 건강하지 않은'(broad unhealthy)이라 했고 '예'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당신은 건강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노동능력(work capacity)에 영향을 줍니까?'라는 질문에

이 많았다. 만약 내생적이라면 임금방정식(wage equation)은 최소자승방정식(OLS)이 아니라 프로빗을 이용해 선택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Fairlie, 2005).

이중차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의 선행연구는 국외문헌에서 일부 보였는데, Madden(2004)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나쁜 건강상태(ill health)가 작업능력(capacity for work)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반영하고 임금방정식에서 표본의 선택편의를 고려하면 건강상태의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는 수준으로 측정된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와 차별은 전 연령층에서 크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건강상태의 측면에서는 차별이 고령자보다 오히려 청장년남성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이는 청장년남성이 주로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일자리에 취업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Gannon과 Munley(2009)는 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고령장애인과 일반고령자 간에 임금격차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용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고용정책은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식 외에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차별이 없도록 다양한 직종개발,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노동공급정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 차별금지법에 제기된 소송건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Bjelland와 Bruyère(2010)는 1993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장애인법(ADA)에 제기된 차별소송이 청장년장애인(16-49세)에 69.9%로 집중된 반면, ADA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DEA)에 공동으로 제기된 이중차별 소송은 고령장애인(50-64세)에 63.9%로 집중된다고 지적한다. 로짓분석을 통해서 ADA/ADE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령일수록, 소규모 회사일수록 특히 고용과 해고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이 높게 나타났다. Pagán(2009)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11개 국가의 50-64세 고령장애인의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상 국가 모두 고령장애인은 일반고령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비율 보다 시간제 근로비율이 높았고 그 격차는 남성 고령장애인보다 여성 고령장애인들에서 매우 높았다.

한편, 고령자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선별이론, 노동시장구조 측면에서 노동시장분절이론이 대표적인데 기존선행 연구들은 3가지 이론들에 근거하여 주요 변인들을 각각 인적자본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시장 변수로 구분한 연구가 많았다(권유경, 1998; 유동철, 2000; 김학주·우경숙, 2004; 전리상, 2006). 첫째, 인적자본이론에서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에 투자를 해도 경제활동에서 한계효용체감과 낮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적자본의 요소에는 개인의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교육수준, 전문기술, 경력, 직업훈련, 근속연수 등(권유경, 1998; 유동철, 2000; 성지미·안주엽, 2006; 김영범, 2008)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교육수준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에 반드시 높아야 경제활동참가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에 대해 선별이론적 관점은 고령장애인에게 투자된 자본은 사업주에게 정확한 정보가 결여된 비확률적인 투자일 수 있다고 본다. 사업주는 고령과 장애를 고용이 어려운 지표(index)로 보고 인적자본이 우수하여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수준, 출신지역 등을 보고 선별적으로 고용하고 임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좁은 의미의 건강하지 않은’(narrow unhealthy)라 개념화 하였다.

금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유동철, 2002; 노승현, 2012). 장지연(2003)은 한국사회의 연공서열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인적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선택적으로 남게 되어 오히려 학력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히려 고용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회사규모가 크지 않고 노동조합 구성이 어려운 용역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임시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이 되기 전에 경증장애인으로 1차 노동시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령이 되면서 은퇴시기가 앞당겨지고 비자발적인 은퇴로 경제활동 참여와 비참여를 반복하여 2차 노동시장으로 전입될 가능성이 높다(김영범, 2008). 고령장애인의 임시일용직(비정규직)의 수치가 일반고령자와 청장년장애인 보다 높은 것은 고령장애인이 고령과 장애로 인해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데이터를 병합(merge)하여 사용하였다.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15세 이상 72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제주제외)에 거주하는 5,092 명에 대해서 기본정보, 장애정보, 경제활동, 직업적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여성·고령자, 개인소득, 가구정보로 10개로 대분류하여 조사한 것이고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고령자 8,688명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가족, 건강상태(장애 포함), 고용, 소득 및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로 7개로 대분류 한 패널조사이다. 두 패널조사를 선정한 이유는 장애인고용과 고령자를 위한 전국 단위의 다단계층화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한 표본수 확보에 가장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의 패널자료로는 분석대상인 3집단(고령장애인, 고령일반인, 청장년장애인)의 표본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유동철, 2000; 강동욱, 2002; Baldwin and Johnson, 1995)에서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분석 자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 변수의 측정수준이 다르거나 변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변수의 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인위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치하는 대체변수를 선택하거나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의 비교선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⁶⁾

6) 고령화패널에서 가구주여부를 명시적으로 묻지 않아 가구원수로 변수를 대체했고 일상생활수행능력 변수는 고령화패널의 ADL/IADL과 장애인고용패널의 ICF활동과 참여에서 동일한 질문문항에 해당하는 12항목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고령화패널데이터에서는 명시적인 장애인 여부 문항이 없었고 669명(전체표본수의 6.5%)이 의사로부터 장애인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장애인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2) 분석모형 및 방법

(1) 고용의 차별 영향 분석 모형

고용차별 분석 모형은 2단계로 설정한다. 첫 번째 실질격차를 확인하는 단계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⁷⁾

$$\text{식 (1): } \ln(P_i/1-P_i) = \sum \beta X_i + \gamma E_i + \delta D_i$$

위 식 (1)의 의미는 X_i 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의 벡터 이고 E_i 는 고령여부, D_i 는 장애여부이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X_i)이 설정된 상태에서 고령여부의 계수치 γ 와 장애여부의 계수치 δ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고령장애인(고령여부=1, 장애여부=1), 일반고령자(고령여부=1, 장애여부=0), 청장년장애인(고령여부=0, 장애여부=1) 집단의 경제활동형태별 실질 고용확률(실업(P_3), 임시일용직(P_2), 상용직(P_1))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고령여부의 계수치 γ 와 장애여부의 계수치 δ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실질격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text{식 (2): } \text{Prob}(y=j) = \frac{e^{\sum_{k=1}^k B_{jk} X_k}}{1 + \sum_{j=1}^{J-1} e^{\sum_{k=1}^k B_{jk} X_k}}$$

두 번째 단계는 집단 간의 고용확률 구하고 이를 격차를 분해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각 집단별로 경제활동형태별 고용확률은 식 (2)와 같이 구하는데, 종사상의 지위별 고용확률은 실업을 기준 범주로 통제변수들이 $\log_e \frac{P_2(\text{임시일용직})}{P_3(\text{실업})}$ 및 $\log_e \frac{P_1(\text{상용직})}{P_3(\text{실업})}$ 에 미치는 영향($\sum \beta$)을 이용하여 고용확률 P_1 (상용직), P_2 (임시일용직), P_3 (실업)를 구할 수 있다. 각각의 범주에 속하게 될 확률은 식 (2)와 같으며 이 때, J 는 종속변수의 범주의 수를, j 는 종속변수의 범주를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업(3), 임시일용직(2), 상용직(1)을 의미한다. 각 집단의 고용확률이 구해지면 총격차를 아래와 같이 Oaxaca(1973)를 이용하여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할 수 있다.

① 연령차별

청장년장애인의 고용확률 P_{YD} 이고 $\widehat{P}_{ED} = P_{YD}(\overline{X}_{ED})$ 가 된다. \widehat{P}_{ED} 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차별

7) 고용차별은 종속변수가 임금노동시장의 종사상지위로 3개 범주(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로 구분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없는 고용확률이고 $\overline{X_{ED}}$ 는 고령장애인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치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청장년 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분해함수는 식 (3)과 같다.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A)는 특성에 의한 격차(B)와 차별에 의한 격차(C)로 나눌 수 있다.

$$\text{식 (3): } P_{YD} - P_{ED} = (P_{YD} - \widehat{P}_{ED}) + (\widehat{P}_{ED} - P_{ED})$$

(A) (B) (C)

② 장애차별

일반고령자의 고용확률은 P_{EN} 이고 $\widehat{P}_{ED} = P_{EN}(\overline{X_{ED}})$ 가 된다. \widehat{P}_{ED} 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장애차별이 없는 고용확률이고 $\overline{X_{ED}}$ 는 고령장애인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치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일반고령자와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분해함수는 아래와 같다. 고령장애인과 일반고령자의 고용확률 격차(A)는 특성에 의한 격차(B)와 차별에 의한 격차(C)로 나눌 수 있다.

$$\text{식 (4): } P_{EN} - P_{ED} = (P_{EN} - \widehat{P}_{ED}) + (\widehat{P}_{ED} - P_{ED})$$

(A) (B) (C)

③ 이중차별

고용에서 실질확률 격차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고령여부와 장애여부 모두가 종사상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이중차별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고령여부와 장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위의 두 식에서 모두 장애차별격차와 연령차별격차의 크기를 확인하면 이중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임금차별 영향 분석 모형

임금차별 분석모형도 2단계로 설정한다. 첫 단계는 실질격차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text{식 (5): } \widehat{W}_i = \sum \beta X_i + \gamma E_i + \delta D_i$$

위 식 (5)의 의미는 X_i 는 시간급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 이고 E_i 는 고령여부, D_i 는 장애여부이다. 시간급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X_i)이 통제된 상태에서 고령여부의 계수치 γ 와 장애여부의 계수치 δ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고령장애인(고령여부=1, 장애여부=1), 일반고령자(고령여부=1, 장애여부=0), 청장년장애인(고령여부=0, 장애여부=1) 집단의 시간급임금의 실질 임금격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고령여부의 계수치 γ 와 장애여부의 계수치 δ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실질격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집단 간 임금격차는

Oaxaca(1973)의 격차분해를 이용하여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묶어 벡터 X 라 하면, 임금함수는 $W = \alpha + \beta X + \epsilon$ 로 표현된다.

① 연령차별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 격차는 아래와 같다.

$$\text{식 (6): } \overline{W_{YD}} - \overline{W_{ED}} = (\alpha_{YD} - \alpha_{ED}) + \beta_{YD}(\overline{X_{YD}} - \overline{X_{ED}}) + \overline{X_{ED}}(\beta_{YD} - \beta_{ED})$$

(A) (B) (C) (D)

이 식(6)에서 $\overline{W_{YD}}$ 는 청장년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 $\overline{W_{ED}}$ 는 고령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이다. 또 α, β 는 추정계수, $\overline{X_{YD}}$ 는 청장년장애인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치, $\overline{X_{ED}}$ 는 고령장애인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치이다. 시간급임금 격차 총량(A)는 설명되지 않는 절편차이(B)와,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따른 시간급임금격차(C), 마지막으로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임금차별에 따른 시간급임금격차(D)이다.

② 장애차별

일반고령자와 고령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 격차는 아래와 같다.

$$\text{식 (7): } \overline{W_{EN}} - \overline{W_{ED}} = (\alpha_{EN} - \alpha_{ED}) + \beta_{EN}(\overline{X_{EN}} - \overline{X_{ED}}) + \overline{X_{ED}}(\beta_{EN} - \beta_{ED})$$

(A) (B) (C) (D)

이 식 (7)에서 $\overline{W_{EN}}$ 는 일반고령자의 시간급평균임금, $\overline{W_{ED}}$ 는 고령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이다. 또 α, β 는 추정계수, $\overline{X_{EN}}$ 은 일반고령자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치, $\overline{X_{ED}}$ 는 고령장애인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치이다. 시간급임금 격차의 총량(A)는 설명되지 않는 절편차이(B)와, 일반고령자와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따른 시간급임금격차(C), 마지막으로 일반고령자와 고령장애인의 임금차별에 따른 시간급임금격차(D)이다.

③ 이중차별

이중차별은 첫 번째 단계로 고령여부와 장애여부가 모두 시간급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져 실질격차가 존재할 때 비로소 이중차별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고령여부와 장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위의 두 식에서 모두 장애차별격차와 연령차별격차의 크기를 확인하면 이중차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변수의 측정

고용차별의 종속변수는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의 지위로 상용직(1년 이상)과 임시일용직(1년 미만), 실업(4주 기준)을 설정하였다. 임금차별의 종속변수는 청장년장애인들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시간급임금을 사용하였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임금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로그처리하였다(유동철, 2000). 독립변수는 고령과 장애인데, 고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준고령자를 포함하여 만50세부터 노인복지법의 주서비스 대상인 만65세 미만 까지로 설정하였다. 장애는 장애등록여부로 장애미등록과 장애등록(장애인고용패널)/장애판정(고령화패널)으로 구분했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 인적자본, 노동시장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변인으로 성별, 결혼상태, 가구원수, 가구소득(로그)이고 인적자본변인은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교육수준, 총경력, 근속연수로, 노동시장변인은 지역, 고용형태, 종사상직책, 회사규모이다. 이중 결혼상태는 배우자 여부,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산을 로그 처리하였다. 건강상태는 건강의 일지장여부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고령화패널데이터의 ADL/IADL과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의 ICF의 활동과 참여에서 중복되는 질문문항 총12개 항목(각각 5점 척도, 총점이 60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졸 6년, 중학졸 9년, 고등졸 12년, 전문대졸 14년, 대학졸 16년, 대학원 석사졸 18년, 박사졸 21년으로 환산하였다. 수료는 동일하게 처리했고 재학과 중퇴는 중간값을 취하였다. 총 경력은 임금노동자로서 노동시장의 근무경력들을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표 3〉 변수표

구분	변수	합수	측정	
종속변수	종사상지위	고용	범주(실업, 임시일용, 상용)	
	시간당임금	임금	연속	
독립변수	고령	고용/임금	범주(청장년[15-49], 고령[50-64]))	
	장애	고용/임금	범주(장애미등록, 장애등록/장애판정)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 적요인	성별	고용/임금	범주(여성, 남성)
		결혼상태	고용/임금	범주(무배우자, 유배우자)
		가구원수	고용/임금	연속
		가구소득	고용	연속
	인적 자본 요인	건강상태	고용/임금	범주(일지장 없다, 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고용/임금	연속
		교육수준	고용/임금	연속
		총경력	고용/임금	연속
		근속연수	임금	연속
	노동 시장 요인	지역	고용/임금	범주(비7대도시, 7대도시)
		고용형태	임금	범주(비정규직, 정규직)
		종사상직책	임금	범주(비관리자, 부장이상 관리자)
		회사규모	임금	범주(300인 미만, 300인 이상)

4. 연구의 결과

1) 고용차별

분석대상자의 종사상지위는 <표 4>와 같이 상용직 비율은 일반고령자(62.8%)가 가장 높았고 고령장애인(35.9%)이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임시일용직과 실업은 고령장애인이 가장 높아 대조를 보였다.

<표 4> 고용차별 분석대상자의 종사상지위별 비교

구분	일반고령자(EN)			고령장애인(ED)			청장년장애인(YD)		
	상용	임시일용	실업	상용	임시일용	실업	상용	임시일용	실업
표본수(N)	638	303	75	217	307	81	317	297	82
비율(%)	62.8	29.8	7.4	35.9	50.7	13.4	45.5	42.7	11.8
합계	1016(100%)			605(100%)			696(100%)		

3집단의 변수별 주요 일반적 특징<표 5> 중에서 가구원수는 부모세대와 1-3명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일 가능성이 높았고 결혼상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혼인률이 낮고 반대로 이혼·사별·별거 비율이 높기 때문에(유동철, 2000) 큰 격차를 보였다. 건강상태는 일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령장애인이 36.7%로 가장 높았다. 가구총소득은 고령장애인이 고령비장애인에 비해서 약 1,228만원 적었고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도 약 226만원 정도가 적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고령장애인이 고령일반인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청장년장애인 보다는 높아 앞에서 살펴본 건강상태의 일지장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학력수준은 고령장애인이 고령일반인에 비해서 2.1년,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도 2.6년 정도 낮았다.

<표 5> 고용차별 분석대상자의 기술통계 결과

변수명	고령일반인 (N=1016)	고령장애인 (N=605)	청장년장애인 (N=696)
종사상지위(1=상용, 2=임시일용, 3=실업)	1.445866	1.775207	1.662356
성별(0=여성, 1=남성)	0.633858	0.710744	0.762931
가구원수(명)	3.094488	2.813223	3.383621
결혼상태(0=무배우자, 1=유배우자)	0.893701	0.73719	0.616379
건강상태(0=일에 지장없다, 1=일에 지장있다)	0.125984	0.366942	0.247126
가구총소득(로그)	7.92409	7.336294	7.474154
일상생활수행능력(총 60점)	59.83339	58.17188	57.57759
학력수준(년)	10.41929	8.328926	10.99713
총경력(년)	23.18799	9.221488	6.443966
지역(0=비대도시, 1=대도시)	0.528543	0.441322	0.402299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지역변수는 $p < .01$ 수준에서 고령일반인과 고령장애인에서 종속변수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표본추출과정에서 지역배분이 원인일 수 있고 청장년에 비해 고령자의 거주지역 선택기준이 일자리 보다는 거주지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노후(aging in community)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장애인은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구원수의 변화와 종사상의 지위 변화에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일반인은 대부분 종사상 지위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각 집단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종사상지위 관련 다항로지스틱 분석 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절대값이 $r = .80$ 이하, VIF 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종사상지위와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변수	전체	고령일반인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종사상 지위	1	1	1	1
고령	-0.0642***	-	-	-
장애	0.1998***	-	-	-
성별	-0.0925***	-0.1468***	-0.0731**	-0.1082***
가구원수	-0.1032***	-0.1058***	-0.0333	-0.1381***
결혼상태	-0.1692***	-0.0856***	-0.0889**	-0.2099***
건강상태	0.2002***	0.1366***	0.1852***	0.1626***
가구총소득	-0.3904***	-0.3701***	-0.3053***	-0.3704***
수행능력	-0.1319***	0.0219	-0.0904**	-0.1406***
학력수준	-0.2269***	-0.2307***	-0.1470***	-0.2250***
총경력	-0.2515***	-0.1472***	-0.1948***	-0.2210***
지역	0.0013	-0.0170	-0.0249	0.1147***

* $p < .1$, ** $p < .05$, *** $p < .01$

고령과 장애에 따른 종사상지위에 실질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7>과 같다. 고령여부의 계수치 γ 이 $p < .1$ 에서 상용직/실업에만 유의하게 산출되었고 장애여부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이중차별은 검증할 수 없고 이후의 분석은 상용직에서의 연령차별만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표 7〉 집단별 종사상 지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비교

변수	전체집단		일반고령자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상용/ 실업	임시일용/ 실업	상용/ 실업	임시일용/ 실업	상용/ 실업	임시일용/ 실업	상용/ 실업	임시일용/ 실업
고령	-0.360*	-0.198	-	-	-	-	-	-
장애	-0.039	-0.041	-	-	-	-	-	-
성별	-0.113	-0.283	-0.3800	-0.812**	-0.343	-0.250	0.335	0.037
가구원수	-0.134*	-0.003	-0.076	-0.026	-0.454***	-0.016	-0.043	0.029
결혼상태	0.223	0.157	-0.154	0.072	0.215	0.405	0.456	0.025
건강상태	-0.738**	-0.180	-0.694*	-0.339	-0.886***	-0.307	-0.591*	0.155
가구소득	1.224***	0.318***	1.524***	0.560***	1.217***	0.123	1.126***	0.362***
수행능력	0.041**	-0.001	-0.449	-0.490	0.034	-0.050	0.050**	0.026
학력수준	0.018	-0.106**	-0.016	-0.126***	0.020	-0.112***	0.079*	-0.073**
총경력	0.023***	-0.008	0.022	0.005	0.030**	-0.009	0.035	-0.024
지역	-0.063	-0.001	0.1700	0.231	0.226	0.120	-0.530*	-0.421
상수	-9.835***	0.483	17.406	28.009	-8.903***	4.377*	-11.074***	-1.842
-2 Log likelihood	3721,671		1486.517		1022.350		1154.467	
Chi-square	659.108		229.925		164.915		200.737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p<.1, **p<.05, ***p<.01

연령차별을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로 구분한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과 격차는 〈표 8〉과 같다.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 간의 예측고용확률 차이는 상용직이 11.74%p, 임시일용직은 -9.05%p, 실업은 -2.69%p이었다.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좋은 1년 이상의 상용직은 고령장애인보다 청장년장애인이 고용확률이 높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직은 오히려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이 8.91%p가 높았다.

〈표 8〉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 격차

구분	청장년장애인에측고용확률 (P_{YD})			고령장애인에측고용확률 (P_{ED})			예측고용확률 차이 ($P_{YD}-P_{ED}$)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확률(%)	43.81	44.94	11.24	32.07	53.99	13.93	11.74	-9.05	-2.69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청장년 함수에 고령장애인의 특성치(평균값)를 대입한 고용확률을 구한 결과 〈표 9〉와 같이 상용직은 35.85%, 임시일용직은 52.11%, 실업은 12.03%로 나타났다. 청장년장애인과 이의 차이가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인데, 상용근로는 7.96%p, 임시일용근로는 -7.17%p, 실업은

-0.79%p이었다.

<표 9>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

구분	청장년장애인에측고용확률(P_{YD})			고령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청장년장애인 함수의 예측 고용확률(\widehat{P}_{ED})			특성으로 인한 예측고용확률차이($P_{YD} - \widehat{P}_{ED}$)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종사상 지위									
확률(%)	43.81	44.94	11.24	35.85	52.11	12.03	7.96	-7.17	-0.79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차별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은 고령장애인의 특성치(평균값)를 반영한 청장년장애인 고용확률 함수값에서 고령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의 차이이다. 연령차별로 인한 예측고용률 차이를 구하면 <표 10>과 같이 상용근로는 3.78%p, 임시일용근로 -1.88%p, 실업은 -1.90%p로 나타났다.

<표 10>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차별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

구분	고령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청장년장애인 함수의 예측고용확률(\widehat{P}_{ED})			고령장애인에측고용확률(P_{ED})			차별로 인한 예측고용확률차이($\widehat{P}_{ED} - P_{ED}$)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종사상 지위									
확률(%)	35.85	52.11	12.03	32.07	53.99	13.93	3.78	-1.88	-1.90

위의 분석을 종합하여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종사상지위별 고용확률 총격차를 100%라고 한다면 <표 11>과 같이 상용직은 특성격차가 67.8%, 차별격차가 32.2%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이 상용직에서 청장년장애인 보다 연령차별보다 특성에 의해서 고용격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연령차별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연령에 따른 고용확률 격차분해

구분	상용	임시일용	실업
특성확률(%)	7.96(67.8)	-7.17(79.2)	-0.79(29.3)
차별확률(%)	3.78(32.2)	-1.88(20.8)	-1.90(70.7)
총격차(%)	11.74(100.0)	-9.05(100.0)	-2.69(100.0)

2) 임금차별

임금차별 분석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표 12>와 같이 고령장애인이 1,102,452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그 수준은 일반고령자의 55.0%, 청장년장애인의 79.6%이었다. 이는 근로시간이 반영이 되지 않은 임금수준이므로 임금수준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일반고령자는 시간당 임금수준이 6,910원, 청장년장애인이 6,525원, 고령장애인은 가장 낮은 5,461원의 수준이었으며 고령장애인은 일반고령자의 79.0%,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94.4%로 앞서 월평균 임금수준에 비해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표 12> 분석대상자 임금수준 비교

대상별	고령일반인(EN)	고령장애인(ED)	청장년장애인(YD)
월평균임금수준(원)	2,004,132	1,102,452	1,384,138
시간당 평균임금수준(원)	6910	5461	6525
표본수(N)	755	473	551
표본수 비율(%)	42.4%	26.6%	31.0%

임금수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과 같고 앞서 살펴본 <표 5>의 고용차별의 대상자와 성별, 가구원수, 결혼상태, 건강상태, 수행능력, 학력수준, 총경력, 지역에서 유사하다. 추가적으로 근무연수는 고령일반인이 12.78년이고 고령장애인은 8.31년, 청장년장애인은 6.32년으로 조사되었고 고용형태는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결과 고령일반인은 임금근로자의 74.2%가 정규직 분포를 보였고 이에 반해 고령장애인은 42.3%, 청장년장애인은 53.5%의 분포를 보였다. 종사상직책은 부장이상의 고위직책이 고령일반인은 8.9%, 고령장애인은 5.7%, 청장년장애인은 5.4%로 나타났다. 회사규모 역시 고령일반인은 300인 이상 대기업체에서 21.6%, 고령일반인은 7.0%, 청장년장애인은 8.0%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표 13〉 임금차별 분석대상자의 기술통계 결과

변수명	고령일반인 (N=755)	고령장애인 (N=473)	청장년장애인 (N=551)
시간급임금로그	8.84078	8.60545	8.78347
성별	0.68212	0.70613	0.77314
가구원수	3.14172	2.80338	3.43739
결혼상태	0.90331	0.74419	0.64247
건강상태	0.10596	0.34884	0.24138
수행능력	59.81283	58.04226	57.77132
학력수준	10.76159	8.19662	11.13612
총경력	24.57351	9.26638	6.58621
근속연수	12.79735	8.31078	6.31760
지역	0.52715	0.45243	0.39383
고용형태	0.74172	0.42283	0.53539
종사직책	0.08874	0.05708	0.05445
회사규모	0.21589	0.06977	0.07985

전체집단의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는 〈표 14〉와 같이 대부분의 변수에서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여부는 시간급임금수준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시간급임금에 로그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관관계의 수준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은 결과로 보인다. 집단별로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했다. 다만 고령일반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59.8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임금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각 집단의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임금 관련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절대값이 $r = .80$ 이하, VIF 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시간급임금수준과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변수	전체	고령일반인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시간급임금로그	1.000	1.000	1.000	1.000
고령	-0.0208	-	-	-
장애	-0.0933***	-	-	-
성별	0.3249***	0.4623***	0.2608***	0.2157***
가구원수	0.1886***	0.1871***	0.2393***	0.1131***
결혼상태	0.2375***	0.2036***	0.1745***	0.3052***
건강상태	-0.1211***	-0.1186***	-0.0611*	-0.1075***
수행능력	0.1304***	0.0184	0.0645*	0.2053***
학력수준	0.4311***	0.5992***	0.2893***	0.2941***
총경력	0.2711***	0.3010***	0.3405***	0.2648***
근속연수	0.4298***	0.5571***	0.3954***	0.2826***
지역	-0.0382*	-0.0113	-0.0674*	-0.0678*
고용형태	0.3258***	0.3571***	0.2066***	0.3362***
종사직책	0.3164***	0.3752***	0.2719***	0.2679***
회사규모	0.2525***	0.2839***	0.1970***	0.2199***

* $p < .1$, ** $p < .05$, *** $p < .01$

고령과 장애변수가 시간급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표 15>와 같이 고용차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변수에만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 변수는 p<.1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장애로 인한 고령장애인과 일반고령자의 임금수준에서 실질격차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없어 이중차별은 검증할 수 없고 이후의 분석은 연령차별만 검증한다.

<표 15> 집단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비교

변수	전체집단 (N=1779)		일반고령자 (N=755)		고령장애인 (N=473)		청장년장애인 (N=551)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령	-0.0784**	0.0395	-	-	-	-	-	-
장애	0.0549	0.0466	-	-	-	-	-	-
성별	0.2330***	0.0344	0.3051***	0.0444	0.1539**	0.0729	0.2132***	0.0700
가구원수	0.0098	0.0129	0.0154	0.0149	0.0670**	0.0302	-0.0328	0.0272
결혼상태	0.1775***	0.0388	0.0428	0.0605	0.0439	0.0802	0.3329***	0.0697
건강상태	0.0235	0.0355	-0.0224	0.0536	0.0284	0.0642	0.0225	0.0693
수행능력	0.0112***	0.0036	0.0213	0.0210	0.0033	0.0063	0.0176***	0.0056
학력수준	0.0404***	0.0041	0.0546***	0.0050	0.0242***	0.0085	0.0350***	0.0085
총경력	-0.0033	0.0021	-0.0022	0.0021	-0.0094	0.0070	-0.0274	0.0187
근속연수	0.0232***	0.0021	0.0217***	0.0018	0.0312***	0.0075	0.0413**	0.0188
지역	-0.0396	0.0277	-0.0147	0.0326	-0.0798	0.0592	-0.0602	0.0594
고용형태	0.1481***	0.0316	0.1513***	0.0397	0.0660	0.0665	0.2282***	0.0638
종사직책	0.4725***	0.0573	0.4529***	0.0610	0.4386***	0.1370	0.4634***	0.1316
회사규모	0.2294***	0.0429	0.1898***	0.0416	0.1868	0.1216	0.3194***	0.1104
상수	7.0636***	0.2250	6.2794***	1.2619	7.6754***	0.3728	6.8753***	0.3344
Rsquare	0.397		0.600		0.269		0.299	
F	83.12***		92.77***		14.09***		19.09***	

*p<.1, **p<.05, ***p<.01

임금수준에서 연령차별을 확인한 결과 <표 16>과 같이 고령장애인은 청장년장애인과 시간급임금수준의 총격차가 100%라고 한다면 특성에 의한 격차가 7.95%이고 차별에 의한 격차가 92.05%로 나타나 연령차별에 의한 임금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특성격차에서는 주로 학력수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났고 차별격차는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크게 발생했다. 특성격차 7.95%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특성은 성별변수에서만 청장년장애인과 임금수준의 격차가 발생했고 인적자본 변수는 학력수준에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 보다 약2.9년이 낮았기 때문에 큰 격차를 보였고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근속연수에서는 고령장애인들이 청장년장애인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역격차가 발생했다. 노동시장변수는 전체적으로 3.19%로 미미한 특성격차를 보였다. 임금수준에서 나

타나는 연령차별 격차 92.05%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사회학적변수에서는 결혼상태에서 차별이 컸고 인적자본에 의한 격차는 대부분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발생하였다. 임금노동자로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 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청장년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장애정도가 편차가 클 수 있으며 고령장애인들이 경증장애인들이 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노동시장변수들의 총 차별 9.01%로 나타났는데, 고령장애인이 비정규직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별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 외 지역, 종사상직책, 회사규모는 차별영향이 미미했다.

<표 16> 연령의 임금차별 영향 분해

구분	변수	청장년장애 인계수(β_{YD})	청장년장애인 특성(\bar{X}_{YD})	고령장애 인 특성(\bar{X}_{ED})	$\beta_{YD}(\bar{X}_{YD}-\bar{X}_{ED})$	비율 (%)	소계 (%)	
특성 격차	인적 특성	성 별	0.2132	0.7731	0.7061	0.0143	1.46	-4.38
		가구원수	-0.0328	3.4374	2.8034	-0.0208	-2.13	
		결혼상태	0.3329	0.6425	0.7442	-0.0339	-3.46	
		건강상태	0.0225	0.2414	0.3488	-0.0024	-0.25	
	인적 자본	수행능력	0.0176	57.7713	58.0423	-0.0048	-0.49	9.14
		학력수준	0.0350	11.1361	8.1966	0.1030	10.53	
		총 경 력	-0.0274	6.5862	9.2664	0.0734	7.50	
		근속연수	0.0413	6.3176	8.3108	-0.0823	-8.41	
	노동 시장	지 역	-0.0602	0.3938	0.4524	0.0035	0.36	3.19
		고용형태	0.2282	0.5354	0.4228	0.0257	2.63	
		종사직책	0.4634	0.0544	0.0571	-0.0012	-0.12	
		회사규모	0.3194	0.0799	0.0698	0.0032	0.33	
소계					0.0778	7.95		
구분	변수	고령장애 인 특성(\bar{X}_{ED})	청장년장애 인 계수(β_{YD})	고령장애 인 계수(β_{ED})	$\bar{X}_{ED}(\beta_{YD}-\beta_{ED})$	비율 (%)	소계 (%)	
차별 격차	인적 특성	성 별	0.7061	0.2132	0.1539	0.0419	4.28	-2.56
		가구원수	2.8034	-0.0328	0.0670	-0.2800	-28.63	
		결혼상태	0.7442	0.3329	0.0439	0.2151	21.99	
		건강상태	0.3488	0.0225	0.0284	-0.0021	-0.21	
	인적 자본	수행능력	58.0423	0.0176	0.0033	0.8309	84.96	85.60
		학력수준	8.1966	0.0350	0.0242	0.0891	9.11	
		총 경 력	9.2664	-0.0274	-0.0094	-0.1666	-17.03	
		근속연수	8.3108	0.0413	0.0312	0.0837	8.56	
	노동 시장	지 역	0.4524	-0.0602	-0.0798	0.0089	0.91	9.01
		고용형태	0.4228	0.2282	0.0660	0.0686	7.01	
		종사직책	0.0571	0.4634	0.4386	0.0014	0.14	
		회사규모	0.0698	0.3194	0.1868	0.0093	0.95	
소계					0.9002	92.05		

5. 결 론

본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과 일반고령자와 비교해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실질격차를 집단 간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하여 고령장애인이 과연 '연령'과 '장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측면에서 고령장애인은 일반고령자와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종사상지위가 낮고 불안정하여 실질적인 격차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만을 검증할 수 있어 이중차별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상용직에서 나타난 연령차별은 청장년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43.81%)과 고령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32.07%)의 총격차가 11.74%이었으며, 이를 격차분해하면 '특성 격차'가 7.96%, '차별 격차'가 3.78%로, 총격차를 100%로 환산할 경우 특성 격차가 67.8%, 연령차별 격차가 32.2%로 제시되었다. 즉, 대부분 격차의 원인이 특성에 의한 것이지만 연령에 따른 차별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일반고령자의 55.0%, 청장년장애인의 79.6% 이고 시간급임금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나 그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수준에서 연령에서만 나타났다. 즉, 장애여부에 따른 이중차별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임금수준에서 나타난 연령차별은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로그시간급 임금수준의 총격차를 100%라고 하면, 특성격차가 7.95%였고 차별격차가 92.05%로 차별격차가 매우 컸다. 연령차별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인적자본변수인 일상생활수행능력(84.96%)에서 큰 차별영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임금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은 연령차별이 나타났지만 장애차별은 검증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중차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고령장애인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장애로 인해서 일반고령자와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연구결과는 고령장애인의 중복소외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김은혜·이효성, 2006; 김용탁, 2007; 황진수, 2008)와 상이한 맥락의 결론으로 기존 연구들이 집단 간 실질격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단지 표면적인 경제활동상의 통계치를 이용할 경우 이중차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실질격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인간은 고령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의 감소를 경험하고 따라서 장애는 소수의 장애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이 체험하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된다(WHO, 2001). 따라서 장애와 건강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 관련 고용정책이 설계되고 반영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사회에서 고령장애인은 종사상지위에 있어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차

별(32.2%)보다 집단의 특성(67.8%)으로 인해 상용직 고용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차별요인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임금수준에서는 매우 큰 연령차별 속에서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임금차별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국외 선행연구(Madden, 2004; Gannon and Munley, 2009)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차별이론은 고용에서는 선별이론적 관점이, 임금수준에서는 인적자본이론이 설명력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의 고령장애인은 고용단계에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임시일용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고용 이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도 높은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이후의 학력수준에 따라서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임시일용직 보다는 상용직 고용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선별이론이 설명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장지연 (2003)의 주장과 동일한 연구결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점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차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기업들이 고령장애인 보다 청장년장애인을 상용직으로 고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고령장애인들은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청장년장애인처럼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고 주변부 집단, 즉 '선택받지 못한 자'로서 낮은 임금수준으로 연령차별을 받으며 힘겹게 노동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장려금정책에서 고령여부(50-64세)를 반영하여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처럼 고령장애인에게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임금보조 외에 노동공급측면의 고용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Gannon and Munley, 2009). 본 연구에서 고령장애인은 임금차별이 매우 컸지만 상용직에서 적지 않은 고용차별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고령장애인은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공공기관의 이용률도 저조한 편이다. 또 취업을 했더라도 대부분 단순서비스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종 개발이 필요하고, 취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⁸⁾ 이러한 고용지원서비스는 노동공급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형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이다(안상훈, 2006).

셋째, 고령자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두 제도는 성격과 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의 논의와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JEED)는 이미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년학자 Toress-Gil(1998)은 미국도 노인(고령자)과 장애인 인구가 함께 증가하면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장애인정책과 노인(고령자)정책이 통합방향(convergence)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 고령장애인과 일반고령자가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제도에서 연령차별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제도를 흡수하는

8) 2012년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청년실업자, 여성)이 구직등록을 하고 신규로 취업했을 경우 제공했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직업교육 이수가 강화된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로 변경하였다. 구직자에게 취업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까지 묶음형(package) 서비스로 제공한다.

통합방안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로 2가지 패널자료를 병합과정에서 변수선정에 최대한 일치성을 유지하려 했으나 기본적인 병합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 변수의 측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해석상에도 제한적인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차별이 일정부분 임금노동자의 선택일 수 있으며 설명되지 않는(unexplained) 또는 차별의 최대치로 해석해야 함을 간과할 수 있다(남재량, 2007). 세 번째, 선행연구의 제한성으로 풍부한 논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기존 노동시장 이중차별 연구가 성별(sex)과 장애(disability)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연령(age)과 장애(disability)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풍부해 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동욱, 2002,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15: 7-32.
- 권유경, 1998, “한국 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범, 2008,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3): 29-51.
- 김용탁, 2007, 『고령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개발 2007-17.
- 김은혜·이효성, 2006,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장애인의 중복소외에 관한 논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6(1): 23~44.
- 김학주·우경숙, 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97-110.
- 남재량, 2007,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0(2): 1-31.
- 노승현, 2012,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51-82.
- 박경수, 2006, “고령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의 과제”, 2006년 고령장애인고용정책 세미나 자료집.
- 박혜전, 2007, “노령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전·이달엽·이승욱, 2003, “노령 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와 태도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3(2): 101-127.
- 안상훈, 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2006.11, 21-49.
- 오욱찬, 2011,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 격차 분석”, 『사회보장연구』, 27(1): 1-25.
- 성지미·안주엽, 2006, “중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39-74.
- 이철희, 2006, 『한국의 고령노동: 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효성·김근아·김태인·오상은, 2007, “고령장애인의 일 경험과 욕구에 관한 연구: 뇌병변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7(2): 55~79.
-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지연, 2003,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16.
- 전리상, 2006,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전미리·안선영, 2011, “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정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5(2): 99-12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실태조사.
 _____, 2008, 장애인실태조사.
 _____, 2011, 장애인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1차 장애인고용패널.
- 황주희, 2011, “고령 장애인의 직업재활 방향 탐색”, 『장애와 고용』, 21(4): 33-62
- 황진수, 2008, “고령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의 과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4: 359-376.
- 홍백의·김혜연, 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정책』, 17(1): 291-319.
- 최성재·장인협, 2006,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조사(63~현재)”, <http://kosis.kr>.
- Baldwin, M. L., and Johnson, W. G., 1995,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dustrial Relations*, 34(4): 555-577.
- Bjelland, M. J., and Bruyère, S. M., 2010, “Age and disability employment discrimination: Occupational rehabilitation implica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0: 456-471.
- Fairlie, Robert. W., 2005,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o logit and probit mode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0: 305-316.
- Torres-Gil, F., 1998, “Policy, politics and aging: Crossroads in the 1990’s”, 75-87, in *New Directions in Old-Age Politics*, edited by Steckenrider, J. S. and Parrott, T. 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annon, B., and Munley, M., 2009, “Age and disability: Explaining the wage differentia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9: 47-55.
- Madden, D., 2004, “Labour marke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ealth: an application to UK data”, *Applied Economics*, 36: 421-442.
- Oaxaca, R. L.,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693-709.
- Pagán, R., 2009, “Part-time work among older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Europe”, *Public Health*, 123(5): 378-383.
-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Fifty-fourth world health assembly.

Empirical Study on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y in Labor Market

-Focusing on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Wage Discrimination of Wage Earners-

Park, Jaecheol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aimed at empirically analysing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due to both age and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real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hourly wages of the elderly disabled(below "E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young disabled(below "YD") and those of the elderly non-disabled(below "END") to calculate empirical differentials between ED's and YD's, and ED's and END's.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between groups were applied by the Oaxaca(1973).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real gaps of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ED and YD only appeared at the regular jobs and the gaps due to the characteristics between ED and YD were bigger than those due to the age discrimination. Second, on the contrary, the gaps of the hourly wages were caused by age discrimination more than characteristics between YD and ED. Third, it was not true tha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ake double discriminations in the labor market. It is therefore required to give the additional incentives to ED workers with government subsidies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provided. Second, it is proposed that the integrations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with those for the aged because the disability as dependent valuable did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the hourly wage levels.

Key words: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Double discrimination, Employment, Wage

[논문 접수일 : 13. 02. 03, 심사일 : 13. 02. 11, 게재 확정일 : 13. 04. 09]